

일반공급 청약안내 1,2순위

□ 청약 일정

구분	신청일시	신청방법	신청방법 및 유의사항
일반공급	1순위 2022.06.16.(목) 09:00 ~ 17:30	인터넷 청약 (PC 또는 스마트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또는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 신청 (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앱스토어에서 "청약홈" 검색)</li> </ul>
	2순위 2022.06.17.(금) 09:00 ~ 17:30		

□ 청약 자격 및 유의사항

구분	내용				
신청자격	순위	청약통장	거주지역	주택소유	과거당첨사실 여부
	1순위	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,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	만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가능	관계 없음	관계 없음
	2순위	청약통장 가입자 (가입기간, 예치금액 무관)			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면적별 선정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용면적 85㎡ 이하 (84A, 84B, 84C) : 가점제 40% / 추첨제 60%</li> <li>- 전용면적 85㎡ 초과 (110A, 110B) : 추첨제 100%</li> </ul> </li> <li>가점제 산정 기준 (총점 84점)</li> </ul>				
	구분	무주택기간	부양가족수	청약통장 가입기간	
배점	최저 : 2점(1년 미만) ~ 최대 : 32점(15년 이상)	최저 : 5점(0명) ~ 최대 : 35점(6명)	최저 : 1점(6개월 미만) ~ 최대 : 17점(15년 이상)		
청약통장 관련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음성군 거주자가 우선함</li> <li>예비입주자 비율은 각 주택형별 일반공급물량의 40%까지 선정</li> </ul>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</li> <li>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: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</li> <li>청약통장 예치금 기준(주택청약종합저축)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</li> <li>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(전용면적 기준) 변경한 분 신청 요건 :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(단,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)</li> </ul>				

□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기준

구분	음성군 및 특별시, 광역시가 아닌 지역	서울특별시,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	음성 푸르지오 센터파크
전용면적 85㎡ 이하	200만원	300만원	250만원	84A, 84B, 84C
전용면적 102㎡ 이하	300만원	600만원	400만원	
전용면적 135㎡ 이하	400만원	1,000만원	700만원	84A, 84B, 84C 110A, 110B
모든면적	500만원	1,500만원	1,000만원	

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단순 참고용으로,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청약홈 청약제도 안내, 관계법령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) 등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일반공급 청약안내 1,2순위

▣ 구비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)

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등을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하여야함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등 모든 항목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람.

※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.

※ 아래 서류 외 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
※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4조에 의거, 당첨자 서류는 최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므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(보관기간 : 입주자로 선정된 자 5년,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6개월 / 이후 파기)

구분	필수	추가	해당서류	발급기준	유의사항
공동 서류	○		신분증 사본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※ 외국인의 경우 :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
	○		인감증명서 (본인서명사실확인서)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계약용(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)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(본인 발급 기준 참조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 명시
가점제 추가 서류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존속	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주민등록표초본	직계비속	• 만30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비속	•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•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직계존속	•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(※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 존·비속	• "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"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부적격 소명자료	○		무주택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•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시가격증명원,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) • 멸실·철거예정 증명서,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기타	-	• 기타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 자료